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62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김용태 · 조정훈 · 엄태영
강명구 · 고동진 · 김재섭
박충권 · 이성권 · 이종배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 및 인근 광역권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운전원의 인건비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차량을 확보하고도 운전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교통수단 외에 모두가 이용 가능한 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택시(임차·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항 중 “설치·운영”을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그 밖에 제1항”으로,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을 “운행”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u>설치·운영</u> 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 ----- ----- ----- <u>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u> ----- ----- -----.
⑨ ~ ⑫ (생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u>자동차</u> 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 ----- ----- ----- ----- ----- ----- <u>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u> ----- ----- -----.

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운행-----

-----.